2005년도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2005.6.16

'0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(4차) 검 토 보 고 서

□ 고제보건지소 신축

총무위원회 전문위원

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(4차)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. 6. 10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 : 2005. 6. 10

라. 의안번호 : 제2005 - 39호

2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안이유

○ 현 고제보건지소 건물이 노후화로 인하여 균열 및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기 위함.

나. 근거법령

- 지방재정법 제77조, 제82조, 동법시행령 제84조, 제89조
-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

다. 주요골자

○ 재산의 취득

구분	소재지	물건	수량 (m²)	예정금액 (백만원)	비고
취득	고제면 농산리 200-19	건 물	339.12 (1층259)	552,637	철콘스라브조(2층)

○ 재산의 처분

- 기존 건물 벽돌조적스라브조 168.3㎡를 철거하나 장부가격 22백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(2억원 이상 처분시 승인)에 의한 승인대상이 아님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현재 사용중인 고제보건지소는 1987년 건물된 조적벽돌 스라 브조 건물로써 노후되어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장소가 협소하여 주 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2층건물로 신축하려는 것임.
- 동 건물신축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제1회 추경예산 승인시 공유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집행토록 조건부 승인한 것임.
- 보건소에서는 2004년도에도 고학, 거기보건진료소 신축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시 승인하였으나 행정절차협의 지연등으로 명시이월되어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초래 하였으므로 금년 도는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.
- 대상부지는 주거지역으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것에 대하여 법 규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됨.

4. 참고자료

□ 지방재정법

- 제7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

- 제84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(매입, 기부채납, 무상양수, 환지, 무상귀속, 교환, 건물의 신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.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 <개정 95·5·16, 96·4·27, 98·7·16, 2000·10·20, 2002·11·29>

- 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(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, 광역 시외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,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).
- 2.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)